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949
----------	-------

발의연월일 : 2023. 12. 18.

발 의 자 : 신현영 · 허종식 · 이소영
고영인 · 김민기 · 김병기
이수진 · 위성곤 · 강민정
송갑석 · 윤영덕 · 허숙정
이용선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자격·면허 취득이나 취업 등을 제한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원천차단하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임.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정신질환자에 대한 결격조항에 대해 폐지를 권고하였으나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아직도 많은 개별법률에서 정신질환을 자격 취득이나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계획 등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있어 정신질환자 자격·취업 제한 관련 법·제도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자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정신질환자 업무수행여부 판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사회통합에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13호 · 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신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정신질환자의 자격취득·취업 제한 관련 법·제도 점검 및 개선
제10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정신질환자의 자격취득·취업 제한 관련 법·제도 현황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정신질환자 업무수행여부 판정위원회) 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정신질환자 업무수행여부 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자격취득 적합 여부 심사

2. 사업 허가·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적합 여부 심사

② 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보건복지부 공무원
 5. 고용노동부 공무원
 6. 그 밖에 정신건강전문가, 인권전문가 등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판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3(업무수행여부 판정심사의 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정신질환의 사유로 자격취득에 제한을 받은 사람
 4. 정신질환의 사유로 취업 또는 사업 등에 제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4(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 ① 판정위원회는 자격부여, 사업의 허가·등록·취소 등에 대하여 해당 정신질환자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기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① . ② (생략) ③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2. (생략) <u><신설></u> 13. (생략) 제10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 6. (생략) <u><신설></u> 7. (생략) ② ~ ⑥ (생략) <u><신설></u>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12. (현행과 같음) 13. <u>정신질환자의 자격취득·취업 제한 관련 법·제도 점검 및 개선</u> 14. (현행 제13호와 같음) 제10조(실태조사) ①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u>정신질환자의 자격취득·취업 제한 관련 법·제도 현황</u>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9조의2(정신질환자 업무수행 여부 판정위원회) ① 정신질환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정신질환자 업무수행여부 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자격취득 적합 여부 심사
2. 사업 허가·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적합 여부 심사

② 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보건복지부 공무원
5. 고용노동부 공무원
6. 그 밖에 정신건강전문가, 인권전문가 등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신 설>

<신 설>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판정위원회
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3(업무수행여부 판정심
사의 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9
조의2제1항에 따른 심사를 청
구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정신질환의 사유로 자격취득
에 제한을 받은 사람
4. 정신질환의 사유로 취업 또
는 사업 등에 제한을 받은 사
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절차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4(심사 및 심사결과 통
지 등) ① 판정위원회는 자격
부여, 사업의 허가·등록·취소
등에 대하여 해당 정신질환자

	<u>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u> <u>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u> <u>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기간</u> <u>·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u> <u>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u> <u>다.</u>
--	--